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문화유산국민신탁)

2018. 12.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3
2. 감사대상기관	3
3. 감사중점	3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3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기부금 및 회비 등의 모금과 보전재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기관경고·통보) ..	5
2. 계약 관련 규정 일부 미준수 및 기관 회계규정 일부 보완 필요(기관주의·개선) ..	11
3. 유물출납직원 미임명 및 유물 관리 규정 보완 필요 등(기관주의·개선) ..	16
4. 일부 채용절차 미준수(기관주의)	18
5. 덕수궁 야간경관조명 개선 사업 보험료 미정산(시정)	20
6. 총회 참여 독려 미흡 및 의결권 산정 부적정(통보)	22
7. 정관과 자체규정 일부 보완 필요(개선)	26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근거하여 2007년 3월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유산의 취득·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문화재청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문화재청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동 기관의 직원은 총 16명(정규직 8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6명)이고, 2018년 예산은 1,628백만원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문화유산의 매입·관리·위탁 실태, 계약 및 지출의 적정성, 인력 채용 절차의 적정성, 정관 및 자체 규정 운용 현황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4. 감사실시 과정 및 결과 처리

이번 감사는 2018. 11. 12.부터 2018. 11. 16.까지(5일간) 법무감사담당관실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문 화 재 청

기관경고 · 통보

제 목 기부금 및 회비 등의 모금과 보전재산 취득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내 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에는 ‘국민신탁’을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이하 ‘문화유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동법을 살펴보면 ‘국민신탁’은 민간으로부터 ▲ 문화유산 등을 ‘기부·증여·위탁’받아 보전·관리하거나 ▲ 수탁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등을 ‘취득’하여 이를 보전·관리하는 행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기된 국민신탁법인의 문화유산 취득 및 보전·관리 절차를 요약¹⁾하면 아래와 같다.

- ▶ 제5조(기본계획)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등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중앙행정기관에 송부
- ▶ 제6조(시행계획)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등을 매년 조사,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
- ▶ 제11조(지정기탁재산) 문화유산 등의 매입·보전·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재산은 기탁자와의 협의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없고, 지정 용도별로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 ▶ 제22조(모금) 문화유산 등의 매입·보전·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모금지역·모금기간·모금액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등을 갖추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 모금

1) 조항은 법률을 기준으로 하였음.

- ▶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등을 매입
- ▶ 제19조(보전협약) 문화유산 등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과 보전협약을 체결, 필요한 지원 또는 보전활동 직접 수행

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미흡

관련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보전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매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1]과 같이 2008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에만 조사를 실시하였고, 홈페이지 내 '알립니다' 메뉴에 조사결과보고서 전자파일만을 등록하고 조사결과 목록을 별도로 작성¹⁾·공고하지 않았다.

[표 1] 문화유산국민신탁의 보전가치 문화유산 조사 현황

연도	지역	조사 건수	비고
2008년	서울·경기·인천	1,009건	
2014년	전북	690건	
2015년	대전·충남	199건	
2017년	부산·경남	178건	
2018년	충북	120건	조사 중

이와 별도로, 국민신탁은 자문위원, 언론, SNS 등을 통해 '지키고 가꾸어야 할 문화유산 12선'을 선정하여 모금활동 등을 통해 매입하거나 소유주와의 협약을 통해 보전·관리하려는 계획을 수립(2015.2.12.)하고도, 12선을 선정하여 홈페이지 내 '알립니다' 메뉴에 등록(2015.8.12.)한 이후, 감사기간 현재까지 이를 매입하거나 관리 협약한 실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국민신탁은 보전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조사한 이후에 기부·증여·위탁 받거나 취득하여야 할 문화유산 목록을 별도로 작성·공고하지 않는 등 수탁·취득 대상 문화유산 선정이 미흡하여, 모금, 매입, 보전협약 등의 후속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신탁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목록을 적극적으로 공고하지 않은 것은 문화유산의 공공성 피력에 따른 소유자 반감을 우려하였던 것이며, 보전재산 또한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활용가능성도 고려하면서 국민신탁운동 확산을 위하여 '시민자산 1호 매입' 대상을 검토하였으나 10억원 이상의 호가로 인하여 매입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보전재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등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소유자 의사도 기재되어 있고, 기부금은 국가 예산과 달리 목표액을 정하여 모금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적립할 수 있으므로 국민신탁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보전재산 취득에 있어 기부금 및 회비 외 모금활동 저조

국민신탁은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승인 받아 교부 받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자체 보조금 외에 기부금과 회비의 경우 기부자와 회원이 용처를 지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지정 또는 비지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그 접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문화유산국민신탁 기부금 및 회비 접수 현황(2015~2017년/단위: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비율	
회 비	지정	43,484,500	51,730,280	59,740,000	154,954,780	2.37%	
	비지정	274,833,870	289,765,840	293,103,080	857,702,790	13.12%	
기 부 금	지 정	대행지정	1,773,028,000	1,509,138,500	1,723,125,000	5,005,291,500	76.56%
		보전지정	82,576,668	105,545,851	48,800,257	236,922,776	3.63%
	비지정	89,766,700	101,958,790	90,800,942	282,526,432	4.32%	
모 금 ¹⁾		-	-	-	-	-	
합 계		2,263,689,738	2,058,139,261	2,215,569,279	6,537,398,278	100.00%	

국민신탁은 회원과 기부자가 별도 용처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회비 및 기부금은 대부분 기관운영비로 집행하고 있고, '지정' 기부금 중 '대행지정'은 '문화재가꿈이 봉사단 운영' 등 용처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해당 사업에만 집행해야 하므로, 국민신탁이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유산 등을 매입·취득할 수 있는 재산은 '문화유산 보전·관리·활용'²⁾이라고 용처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회비 및 기부금으로 전체의 약 6%뿐이다([표2]의 음영부분).

1)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감사반에서 감사결과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기부하는 '기부금'과 신탁법인이 주체가 되어 용도를 정한 후 기부금을 모집하는 '모금'을 구분하고 '모금'란을 임의 추가하였음. 참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2) '보전재산 매입·보전·활용', '문화재보전기금' 등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국민신탁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회비 및 기부금 외에 모금활동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야 하나, 국민신탁이 「국민신탁법」 제22조(모금)에 따라 모금계획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모금한 경우는 2012년10월부터 2013년9월까지 진행한 ‘○○○1)-신한가족 문화재 지원 나눔함 사업’²⁾뿐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금’ 활동이 ‘기부금’ 및 ‘회비’ 접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다. 기부·증여 외 부동산 문화유산 매입 저조

설립 이후 국민신탁이 수탁·취득한 부동산 문화유산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민간으로부터 기부·증여 받은 것 외에 ‘매입’을 통해 취득한 것은 2009년과 2010년에 각 1건씩 총 2건이나, 이는 모두 ○○○○○○으로부터 지정기탁금을 받아 매입한 것으로 설립 이후 감사기간 현재까지 ‘모금’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문화유산이 없는 등, 총 136점의 동산 문화유산을 매입(하단의 ‘마’ 참조)한 데 반하여 부동산 문화유산의 매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표 3]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전재산 등 현황

구분	명 칭	취득일	취득방법	매입·증여금액(원)
보 전 재 산	이상 옛집 터	2009.7.10.	매입	300,000,000
	윤경렬 옛집	2010.12.22.	매입	170,000,000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2011.7.25.	증여	1,141,219,800
	소 계			1,611,219,800
지정 기탁 재산	윤경렬 옛집 주변농지	2011.1.24.	증여	15,652,000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주변농지	2011.7.25.	증여	3,007,184,600
	이상의 방(이상의 집 증축 건물)	2016.7.27	증여	270,708,042
	소 계			3,293,544,642
수 탁 재 산	구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	2008.6.20.	수탁	471,778,600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등록문화재 제235호)	2008.7.14.	수탁	821,255,500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등록문화재 제330호)	2010.12.22.	수탁	1,321,639,720
	대전 소대현·호연재 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00호)	2014.4.16.	수탁	2,005,179,000
	소 계			4,619,852,820
총합계		10 개소		9,524,617,262

라. 보전재산 공개 시 동산 문화유산 누락

「국민신탁법」 제2조(정의)에는 ‘보전재산’을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1조(지정기탁재산)에는 ‘지정기탁재산’을 ‘문화

1) 포털 사이트 □□□(▲▲▲)와 (재)○○○이 함께 운영하는 기부 포털
 2) 목표금액 50,000천원 중 16,000천원 모금(32%)

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정의되어 있고,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등에 따라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문화유산국민신탁 정관」 제33조(재산의 구분)에는 '보전재산'을 '1.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보전재산으로 기부·증여 또는 위탁받은 문화유산, 2. 지정기탁재산의 용도에 따라 취득한 문화유산, 3. 그 밖에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취득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기탁재산'을 '보전재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정의되어 있다.

국민신탁이 설립 이후 지정 기부금으로 매입한 유물은 아래 [표 4]와 같이 136점으로, 매입한 유물이 동산 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정관에 따라 '지정기탁재산으로 취득한 문화유산'으로서 '보전재산'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매입 유물은 '보전재산'과는 별도로 인식하여 공개하지 않고 유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9] 문화유산국민신탁 유물 구입 현황

연도	건수	금액(천원)
2013	7	11,500
2014	27	159,000
2015	27	49,200
2016	32	60,000
2017	26	99,460
2018 (11.12.기준)	17	58,200
계	136	437,360

마. 유물 매입 절차 미준수 및 관련 세부지침 마련 필요

「국민신탁법」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에 따라 국민신탁법인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등을 매년 조사한 후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조사를 통해 보전가치를 확인하고, 문화유산의 현황을 일반에게 알려 모금 등을 통해 수탁·매입토록 한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12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에는 국민신탁이 문화유산을 매입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신탁이 유물을 매입할 때에는 보전가치가 있는 유물 등의 문화유산을 우선 조사하여 결과목록을 공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¹⁾을 거쳐 이를 매입하여야 하나,

국민신탁은 보전가치에 대한 조사와 결과목록 작성 및 공고 없이 이사장이 대상 유물을 선정한 후 별도의 평가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입하는 등, 보전가치 유무나 평가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채 유물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인터넷 등 일반에 공개(상단의 '라' 참조)하지 않았다.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7조(구입대상유물 평가 및 심의)에 따라 3차례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사박물관의 「대한민국의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구입방법)에는 자료 구입 시 관련 위원회의 선정·평가·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국민신탁은 유물 구입 지침 이외에도 기관의 주요 업무인 문화유산의 취득·보전·관리·활용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아직 제정하지 않아 이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1. 보전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조사결과 목록을 작성·공고하고, 동산 문화유산에 대하여도 조사·목록작성·공고 이후 매입하며, 보전재산 공개 시 동산 문화유산도 공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2. 또한, 기부·증여 외에 모금활동을 통한 보전재산 취득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통보)
3.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이사회에서는 매 개월 때마다 보전재산의 매입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토록 의결하였음.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 개선

제 목 계약 관련 규정 일부 미준수 및 기관 회계규정 일부 보완 필요

관계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내 용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과 기부금¹⁾을 집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민신탁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하면서, 국민신탁으로 하여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도록 하였다.

국민신탁의 「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신탁의 회계처리는 동 규정과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예산 회계 관련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재무관·지출관 미임명 및 계약보증서 등 미징구

국민신탁 「회계규정」에는 회계 관계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민신탁은 정부 예산 회계 관련 법령 중 하나인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2조(지출의 절차), 제27조(지출 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담당(재무관), 지출 담당(지출관), 출납 담당 직원을 임명하되 직무를 서로 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신탁은 현재 회계담당부서(협력지원팀) 직원을 2명만으로 운영하면서

1) 2017년의 경우, 문화재청 국고보조금이 794,500천원(법인 활성화 지원 727,000천원, 보성여관 및 울릉센터 생생사업 지원 67,500천원), 지자체보조금이 416,000천원(돌봄사업 399,000천원, 중구청지원금 17,000천원)이며, 회비 및 기부금은 2,215,569천원임.

재무관을 별도 임명하지 않고, 각 사업 담당자가 재무관 업무를 담당하고 지출 시에만 회계담당 직원을 통해 지출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회계 업무 및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도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상기 「회계규정」 제60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나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신탁은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계약보증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2015년부터 2018년 11월16일 감사기간 현재까지 5천만원을 초과한 111¹⁾건(1,463,995천원)의 계약 중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3건 외에는 계약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5천만원 이하의 계약 건도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나. 지출 증빙서류 보관 미흡 및 회계규정 내 영수증서 범위 명확화 필요

국민신탁의 「회계규정」 제34조(증빙서)에 지출결의서에는 사안에 따라 지출명세 견적서, 주문서, 입찰서, 예정가격조사, 계약서, 검수조서,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신탁은 멸실 우려 문화유산의 취득, 증명전 전시관 내 전시 등을 위하여 2014년부터 서화류·사진·서적 등의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2015년 1월부터 2018년

1) 공사계약 : '대전 송용역가옥 보수정비공사' 등 6건(977,005천원)
용역계약 : '궁중문화활용 콘텐츠 전시 용역' 등 3건(359,000천원)
물품계약 : '문화재 보존관리용 살수차 구매' 등 2건(127,990천원)

11월까지의 아래 [표]와 같이 총 129개 품목(266,860천원)을 문화재 매매업자인 ◇◇◇◇◇◇(대표 ◆◆◆)과 ●●●(대표 ●●●)으로부터 소액 수의의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표] 2015년 이후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유물구입 현황

년도	구입품목	구입대금(천원)	구입처
2015	문동현 교지 등 42품목	49,200	◇◇◇ ◇◇◇◇◇◇(41품목), ●●●(1품목)
2016	백범김구 기념시계 등 34품목	60,000	◇◇◇ ◇◇◇◇◇◇(33품목), ●●●(1품목)
2017	김옥균 유묵 등 33품목	99,460	◇◇◇ ◇◇◇◇◇◇(32품목), ●●●(1품목)
2018	김응원 석란도 등 20품목	58,200	◇◇◇ ◇◇◇◇◇◇(20품목)
129품목		266,860	◇◇◇ ◇◇◇◇◇◇(126품목), ●●●(3품목)

그러나, 국민신탁은 ●●●(대표 ●●●)을 통해 구매한 3건은 지출 증빙서류로 작품 보증서와 견적서, 간이영수증만을 보관하고 있고, ◇◇◇ ◇◇◇◇◇◇(대표 ◆◆◆)에서 구입한 126건은 간이영수증만을 보관하는 등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보관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세무계산서는 사업자인 채권자와의 거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뿐 아니라 과세자료로서 기능하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의 영수증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민신탁의 「회계규정」 제34조(증빙서)는 관련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감사원법」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및 감사원 규칙 「계산증명규칙」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에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등을 받는 자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서, 견적서 및 청구서, 계약서, 기타 지출 내용 증명 서류 등을 보관·제출하여야 하고, 영수증서는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세무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출관의 사유서로 규정하고 있다.

다. 계약방법 결정 규정 보완 필요

국민신탁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조금 교부조건 중 하나인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7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는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편, 국민신탁의 「회계규정」 제59조(계약의 원칙)에는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 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경쟁 입찰계약, 지명경쟁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규정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기부금의 경우에는 국민신탁이 계약방법을 임의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보조금과 기부금 구분 없이 2015년 이후 국민신탁의 5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의 계약방법 구분 기준인 5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 및 용역, 또는 2억원 초과 시설공사 계약은 총 7건이었으며, 이 중 4건이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1)

[표] 2015년 이후 문화유산국민신탁의 500만원 이상 계약 현황

구분	총 계약 현황		2억원 초과 공사 또는 5천만원 초과 용역·물품 계약 현황		경쟁계약 현황 (제한경쟁 포함)		수의계약 현황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공사	30건	1,514,347	2건	607,999	1건	357,999	1건	250,000
용역	59건	1,592,880	3건	359,000	-	-	3건 ²⁾	359,000
물품	37건	706,206	2건	127,990	2건	127,990	-	-
계	126건	3,813,433	7건	1,094,989	3건	485,989	4건	609,000

요컨대, 현재 국민신탁의 계약방법 결정 기준 규정은 보조금 및 기부금 여부에 계약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서 조항’은 같은 조항 내에서 본문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때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고 구체적

1)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는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더라도 꼭 일반경쟁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은 아님.
2) ‘청소년 역사바로알기 캠페인 홍보’(2015.10.8.~2015.12.18./52,000천원)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달청 또는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하여야 함에도 국민신탁이 직접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하였음.

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임에도 계약방법을 임의 적용할 여지가 있는 등 해당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1. 재무관 및 지출관을 임명하고 회계관계직원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며, 계약 시에는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을 제출받고, 지출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2. 또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대한 영수증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회계규정」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문 화 재 청

기관주의 · 개선

제 목 유물출납직원 미임명 및 유물 관리 규정 보완 필요 등

관계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내 용

가. 유물출납직원 미임명 및 기탁·위탁 유물 관리 규정 미비 등

국민신탁의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3조(유물관리자)에는 이사장이 유물출납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유물의 관리)에 이사장은 매년 1회(6월) 소장유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신탁은 총 136건 172점의 서화·고서 등의 문화유산을 소장유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81건 105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김구기념관¹⁾에 기탁하였고, 6건 8점은 덕수궁관리소에 관리 위탁하였으며, 49건 59점은 사무실 내 유물 보관고에 직접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신탁은 유물출납 직원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았고,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유물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기탁 또는 관리 위탁하면서 반출 시에만 점검하였다.

또한, 국민신탁은 소장유물 중 81건 105점을 기탁 또는 관리 위탁하고 있으나, 「소장유물 관리규정」에는 유물의 대여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고 유물을 기탁 또는 관리 위탁한 경우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사무실 내 유물 보관고는 온·습도 조절이나 방충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결산서 제무제표 작성 시 일부 문화유산 자산 누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에 따라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과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79건 103점, 김구기념관에 2건 2점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공개하여야 하며, 제14조(회계 등)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 그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신탁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결산서를 작성, 정기총회를 의결을 거친 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자체 홈페이지 내 알림을 통해 결산서를 공고하며 재산 현황 또한 보전재산, 지정기탁재산, 수탁재산으로 구분하여 홈페이지 내에 공고하고 있다.

국민신탁은 결산서 작성 시 취득한 건물, 서화 및 고서 등을 '기타 비유동 자산' 중 '문화유산'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있는데, 2017년 결산서 재무제표에는 총 808,296천원의 문화유산을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재무제표 상 문화유산 보유총액 및 목록과 유물대장을 비교한 결과, 민영환 유서 등 14점¹⁾ 총 27,300천원의 문화유산이 누락되어 있었다.

조치할 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1. 유물출납 직원을 별도로 임명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유물을 점검하며, 결산서의 재무제표에 누락되는 문화유산 자산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2. 또한, 유물을 기탁 또는 관리 위탁한 경우에 대한 관리 규정을 명시하는 등 「소장유물 관리규정」을 보완하고, 유물 보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1) 2013년 구입 9점, 2014년 구입 2점, 2017년 구입 3점

문 화 재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일부 채용 절차 준수 미흡

관계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내 용

가. 평가기준 설정 및 심사위원 구성 미흡

문화재청은 공공부분에서의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 등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보(2017.12.19.)하였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 채용절차 이행 철저'를 요청(2018.2.19.)한 바 있다.

국민신탁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감사기간 동안 이에 대한 채용 절차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8회 모두 ▲ 채용 계획 수립 시 서류전형 합격자의 인원을 명시하거나 평가 및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관련 계획 없이 서류전형을 진행하여 임의로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고, ▲ 면접 전형의 평가기준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으며, ▲ 외부위원 없이 면접 전형 심사위원을 내부직원만으로만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평가 기준 설정이나 심사위원 구성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나.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 미준수

국민신탁의 「인사 및 복무규정」 제5조의 2(채용방법)에는 '직원의 채용은 공개 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거나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조항이 신설(2014.2.13.)된 이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총 3명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는데(2015.2.1./2명, 2016.3.1./1명), 국민신탁은 상기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대상자에 대한 근무평정과 이사장 면담 평가만으로 전환 결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각 전형별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면접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공정한 채용절차를 따르기 바라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시 정 (환수)

제 목 덕수궁 야간경관조명 개선 사업 보험료 미정산

관계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내 용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포르쉐코리아로부터 '덕수궁 보전 복원 지원' 용도의 지정기탁금을 받아 '덕수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서울지방조달청에 계약 요청하여 (주)○○○○○○와 계약(2016.8.25.~2016.12.07.)하고 준공 후 공사대금 (80,862,110원)을 지급하였다.

상기 공사의 입찰 공고(2016.7.27.)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신탁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 입찰 공고문의 보험료를 정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 서류 등을 그대로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총 1,558,650원¹⁾을 과다 지급하였다.

국민신탁은 상기 사업이 '덕수궁 보전 복원 지원' 용도의 지정 기탁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의 덕수궁관리소가 공사범위를 정하여 계약 요청하고 해당 공사를 감독하여 감독 공무원의 준공조서에 따라 대금을 집행하였다면서도 최종 공사대금 지급 전 검토를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과지급한 보험료는 환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1)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해당 보험료 반납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 시 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기성검사가 아닌 준공검사 후 준공대금 지급 시 보험료 정산은 계약자인 국민신탁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치할 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덕수궁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초과 지급금 1,558,65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입찰 공고 시 관련 보험료를 정산 하기로 하였으면 보험료를 정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준공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통 보

제 목 총회 참여 독려 미흡 및 의결권 산정 불합리

관계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내 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7조(총회 및 이사회)에 따라 국민신탁법인은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은 총회와 관련하여 정관과 자체 규정인 「회원의 총회의결권 정수부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총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총회 개최 시 회원 참여 독려 미흡

국민신탁은 「문화유산국민신탁」 정관 제6조(회원의 가입)와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회원을 기부·증여·위탁하거나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면서, 그 자격을 아래 [표 1]과 같이 으뜸회원, 큰힘회원, 보람회원, 나눔회원, 키움회원, 자람회원, 함께회원, 기림회원, 늘빛회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국민신탁의 운영과 제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자격 현황

회원종류	회 원 자 격
으뜸회원	보전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거나 보전재산의 매입을 위하여 3억원 이상을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
큰힘회원	입회비 1천만원 이상과 연회비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
보람회원	입회비 없이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연회비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보람회원 회비 상당액의 일반재산을 기부·증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
나눔회원	입회비 없이 매월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연회비 5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키움회원	매월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청소년
자람회원	매월 1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청소년
함께회원	매월 2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가족
기림회원	문화유산의 보전 및 관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 개인
늘빛회원	1백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국민신탁의 「회원의 총회 의결권 정수부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회원 대표자의 의결권 정수)에는 상기 회원 중 으뜸회원 및 큰힘회원과 보람회원만이 의결권의 정수를 가지면서, 으뜸회원과 큰힘회원은 각각 1표씩을, 보람회원의 경우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되지 않은 회원 100인당 1인의 회원 대표자를 선출한 후 그 대표자에게 1표의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람회원의 경우 현재 지역별 모임 또는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100인을 대표하는 1인의 회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민신탁 또한 보람회원의 지역별 모임 및 동호회를 구성하려 한 바 없는 등 총회 참석에 대한 독려가 부족하여 2007년 3월 법인 설립 이후 2018년 제12기 정기총회(2018.2.9.) 까지 보람회원이 회원 대표자로 총회에 참석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재단은 정기총회 소집을 재단 홈페이지 내 알림 메뉴를 통해서만 공지하면서 회원들에게는 별도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총회 소집을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아, 2008년 이후 감사기간인 2018년 11월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된 정기총회 소집 관련 내용에 대한 조회수가 4~16회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기총회 개최를 회원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임시총회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고 재단 홈페이지에도 공지하지 않고 으뜸회원과 큰힘회원에게만 공문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알려, 보람회원 등 일부 회원은 임시총회 개최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등 국민신탁의 운영과 제반활동에 참가할 수 없었다.

나. 총회 의결권 산정 불합리

「문화유산국민신탁」 정관 제21조(총회의 성립과 의결)에 따르면 총회는 의결권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신탁의 제12기 정기총회(2018.2.28.)의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국민신탁의 회원은 으뜸회원 3명, 큰힘회원 21명, 보람회원 1,849명으로,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된 보람회원을 제외하면 회원별 의결권 정수는 으뜸회원 3표, 큰힘회원 21표, 보람회원 16표 등 총 40표로 과반인 21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의할 수 있고 출석한 의결권자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의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신탁은 으뜸회원의 의결권은 모두 산정하였지만, 큰힘회원의 의결권은 연회비 미납에 따른 의결권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6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을 제외하고 의결권을 산정하였으며, 보람회원의 의결권은 정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의결권 정수를 12표로 결정한 후 으뜸회원과 큰힘회원 10명이 출석하자 개의를 선언하고 안건을 의결하였다.

2015년 이후 개최된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살펴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출석 인원이 의결권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모두 개의할 수 없음에도, 총회 개최를 개의하고 안건을 의결하였다.

[표 2] 2015년 이후 총회 출석 인원 현황

회차	출석인원	총회 당시 의결권의 정수				계 **
		으뜸 회원	큰힘회원		보람 회원	
			법인	개인		
2015년 정기총회	으뜸회원과 큰힘회원 총 9명 / 참석 : 4 위임 : 5	3	14(5)*	7(3)	55(16)	40
2015년 임시총회	으뜸회원과 큰힘회원 총 6명 / 참석 : 3 위임 : 3	3	14(5)	7(3)	55(16)	40
2016년 정기총회	으뜸회원과 큰힘회원 총 7명 / 참석 : 5 위임 : 2	3	14(6)	7(3)	58(16)	40
2017년 정기총회	으뜸회원과 큰힘회원 총 7명 / 참석 : 6 위임 : 1	3	14(5)	7(2)	60(18)	42
2017년 임시총회	으뜸회원과 큰힘회원 총 6명 / 참석 : 1명 위임 : 5	3	14(5)	7(2)	60(18)	42
2018년 임시총회(1차)	으뜸회원과 큰힘회원 총 7명 / 참석 : 1명 위임 : 6	3	14(6)	7(3)	60(18)	42
2018년 정기총회	으뜸회원과 큰힘회원 총 10명 / 참석 : 7 위임 : 3	3	14(6)	7(3)	60(18)	42
2018년 임시총회(2차)	으뜸회원과 큰힘회원 총 7명 / 참석 : 1 위임 : 6	3	14(6)	7(3)	60(18)	42

* 괄호 () 안은 연회비 6개월 이상 미납으로 회원 권한을 제한하였을 경우의 의결권 수

** 계의 산정은 '①으뜸회원 정수' '② 6개월 이상 연회비 미납 회원을 포함한 큰힘회원 수' '③ 6개월 이상 미납 회원을 제외한 보람회원 중 의결권(100인 중 1표)의 합(①+②+③)으로 산정함

조치할 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총회 개최 시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과 회원 구분에 따라 의결권 정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 화 재 청

개 선

제 목 정관과 자체규정 일부 보완 필요

관계기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내 용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정관 외에 회원관리규정 등 15개 자체 규정과 위임전결규칙 등 4개의 규칙,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규관리규정」 제3조(효력의 순위)에 내규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정관과 규정에 조문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내용 누락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문화유산국민신탁 정과 및 자체규정 보완 필요사항

구분	관련조항	조문내용	문제점
정관	제6조(회원의 가입) 제3항	보존회원의 가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 및 규정에 보존회원이 정의 되어 있지 않음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항	이사장 이외에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제18조(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나 궐위된 때에는 부이사장,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와 상충
회원관리 규정	제4조(회원의 종류에 따른 자격요건) 및 제10조(회원 종류의 전환)	‘일반회원’, ‘보존회원’, ‘1%회원’ 등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인사 및 복무 규정	제4조(인사위원회) 및 제5조의2(채용방법)	특별 전형 채용 등을 위해 인사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미운영	
	제3조의2(직원의구분) 및 제11조(계약직원)	계약직원의 채용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미제정	
	제24조(근무성적의 평정)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2급 이상의 직원이 있음에도 「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칙」에는 3급 이하 일반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49조(특별휴가) 제2항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는 다태아 임신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신탁의 규정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제25조(휴직 등)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하여야만 하는 의무 규정임에도 국민신탁의 규정에는 생후 6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사장의 재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조치할 사항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정관과 규정에 조문이 상충 또는 불명확한 경우,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